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해제 공고 알림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289(2026.8.6.)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조정, 해제하여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허가구역 관리 등 관련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공고내용을 지체없이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7 일 이상 공고(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해제는 공고 즉시 효력 발생)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고 내용이 반영되도록 처리 (해제는 공고 당일, (재)지정 및 조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반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 호] ○ 지가변동 및 토지거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투기적인 거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거래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 ※ 기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대상사업(지목'도로'한정)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서울시 사업부서(전락주택공급과)와 사전 협의 필수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해제 공고문 1부.

2. 지정 및 조정 토지조서 1부.

3.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산파일(용량초과로 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 서울특별시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용산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 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중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성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은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서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양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강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금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관악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송파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전병길

부동산제도팀장

유병민

주택정책과장

전결 2026. 8. 6.

강준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837

(2026. 8. 6.)

접수 부동산정보과-17507

(2026. 8. 6.)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번호 02-2133-7027

팩스번호 02-2133-0752

/ wjsqud26@seoul.go.kr

/ 부분공개(5)